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303895		
등록번호	110111-3038951		
상 호 =	주식회사 디스트릭트	홀딩스	변경 등기
2	주식회사 디스트릭트	코리아 (D'STRICT KOREA, INC.)	<u>2022.04.29</u> 변경 2022.05.03 등기
본 점 🕹	서울 강남구 논현동	9 5-14 동성빌딩 4층	변경 등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	년릉로145길 16, 4층(논현동, 동성빌딩)	2011.10.31 도로 명주소 2013.07.01 등기
<u></u>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	남성로 350-5(대치동, 도체스터빌딩)	2014.06.20 변경 2014.06.25 등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ㅌ	ll헤란로87길 29, 904호(삼성동, 엠타워)	2019.05.11 변경 2019.05.23 등기
공고방법	서울시내에서 발행	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개재한다.	변경 등기
	kr)에 개재한다. 더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strict.com/ 나만 전산장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 나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인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2020.03.31 변경 2020.08.14 등기
)에 게재한다. 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kr.dstrict.com 난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 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2023.03.27 변경 2023.05.01 등기
1주의 금액	금 5,000 원		변경 등기
	금 500 원		2007.08.10 변경 2007.08.20 등기
발행할 주~	식의 총수 240,000	주	변경 등기
	2,400,00	0 주	2007.06.28 변경 2007.07.11 등기
	10,000,0	00 주	2011.05.20 변경 2011.05.20 등기

열람일시 : 2024년05월29일 14시53분57초 1/43

등기번호	303895		
	15,000,0) 주	2020.03.31 변경 2020.08.14 등기
	500,000,	00 주	2022.10.21 변경 2022.11.04 등기

발행주식의 그 종류 및 기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60,000 주		변경
보통주식	60,000 주	금 300,000,000 원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2,000 주		2004.12.23 변경
보통주식	72,000 주	금 360,000,000 원	2004.12.2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20,000 주		2007.08.10 변경
보통주식	720,000 주	금 360,000,000 원	2007.08.2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57,767 주		2007.12.29 변경
보통주식	757,767 주	금 378,883,500 원	2007.12.3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934,238 주		2008.07.08 변경
보통주식	934,238 주	금 467,119,000 원	2008.07.0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335,595 주		2010.06.22 변경
보통주식	2,335,595 주	금 1,167,797,500 원	2010.07.1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682,817 주		2011.06.22 변경
보통주식	2,335,595 주		2011.06.27 등기
우선주식 -	347,222 주	금 1,341,408,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2,960,594 주		2011.08.18 변경
보통주식	2,335,595 주	<u>.</u>	2011.08.18 등기
우선주식	624,999 주	금 1,480,297,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313,535 주		2011.11.30 변경
보통주식	<u> 2,335,595</u> 주		2011.11.30 등기
우선주식	977,940 주	금 1,656,767,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702,423 주		2013.01.31 변경
보통주식	2,335,595 주		2013.01.31 등기
우선주식	<u>1,366,828 주</u>	금 1,851,211,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949,327 주		2013.04.25 변경
보통주식	2,335,595 주		2013.04.25 등기
우선주식	<u>1,613,732 주</u>	금 1,974,663,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365,993 주		2014.05.30 변경
보통주식	2,335,595 주		2014.05.30 등기
우선주식 -	2,030,398 주	금 2,182,996,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379,881 주		2014.04.27 변경
보통주식	2,349,483 주		2014.12.31 등기
우선주식 -	2,030,398 주	금 <u>2,189,940,500</u> 원	
발행주식의 총수	4,382,658 구		2014.05.23 변경

303895

발행주식의 충 그 종류 및 각 ²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u> </u>	4위 ㅜ 		<u>중기원월월</u> 2014.12.31 등기
우선주식	2,030,398 7	금 2,191,329,000 원	2014.12.31 3/
발행주식의 총수	<u> </u>	급 2,191,329,000 원	2014.05.25 변경
보통주식	1,355,037 주		2014.03.23 단경 2014.12.31 등기
우선주식	2,030,398 7	금 2,192,717,500 원	2014.12.31 3/
발행주식의 총수	4,403,490 주	급 2,192,717,500 원	2014.07.27 변경
보통주식	2,373,092 7		2014.07.27 전경
우선주식	2,030,398 주	금 2,201,745,000 원	2014.12.31 6/
발행주식의 총수	4,424,323 주	급 2,201,745,000 원	2014.11.15 변경
보통주식	2,393,925 7		2014.11.13 년/8
우선주식	2,030,398 7	금 2,212,161,500 원	2014.12.31 3/
발행주식의 총수	5,044,323 주	ㅁ 2,212,101,500 년	2019.11.02 변경
보통주식	3,013,925 주		2019.11.15 등기
우선주식	3,013,323 구 2,030,398 주	급 2,522,161,500 원	2013.11.10 07
발행주식의 총수	5,257,620 주	요 2,022,101,500 전	2019.12.17 변경
보통주식	4,594,050 주		2019.12.26 등기
우선주식		급 2,628,810,000 원	2013.12.20 671
발행주식의 총수	5,257,620 주	1 2,020,010,000 1	2020.04.23 변경
보통주식	4,840,954 주		2020.05.07 등기
우선주식	416,666 주	금 2,628,81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5,712,620 ₹		2020.03.27 변경
보통주식	5,295,954 주		2020.08.14 등기
우선주식	416,666 주	금 <u>2,856,310,000</u> 원	
발행주식의 총수	5,978,631 주	7 0	2020.05.30 변경
보통주식	5,561,965 주		2020.08.14 등기
우선주식	416,666 주	금 2,989,315,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9,039,855 주		2020.08.29 변경
보통주식	8,623,189 주		2020.09.14 등기
우선주식	416,666 주	금 4,519,927,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11,080,671 주		2020.12.31 변경
보통주식	10,664,005 주		2021.02.05 등기
우선주식	416,666 주	급 5,540,335,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11,080,671 주		2021.05.29 변경
보통주식	11,080,671 주	금 5,540,335,500 원	2021.06.0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91,080,671 주		2023.02.02 변경
보통주식	11,080,671 주		2023.02.13 등기
상환우선주식	80,000,000 주	금 -45,540,335,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12,680,671 주		2023.04.29 변경
보통주식	11,080,671 주		2023.05.01 등기

발행주식의 총· 그 종류 및 각각	· · ·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상환우선주식	1,600,000 주	금 6,340,335,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13,480,671 주		2023.08.03 변경
보통주식	11,080,671 주		2023.09.26 등기
상환우선주식	2,400,000 주	급 6,740,335,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13,672,847 주		2024.01.16 변경
보통주식	11,080,671 주		2024.01.26 등기
상환우선주식	2,592,176 주	금 6,836,423,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14,072,847 주		2024.04.09 변경
보통주식	11,080,671 주		2024.04.19 등기
상환우선주식	2,992,176 주	금 7,036,423,500 원	
	목	적	
1. 소프트웨어 개발업		<2004.11.29 삭제 20)04.12.10 등기>

	목 적			
1. 소프트웨어 개발업	<2004.11.29	삭제	2004.12.10	등기>
2. 컴퓨터 그래픽 제작업	<2004.11.29	삭제	2004.12.10	등기>
3. 애니메이션 제작업	<2004.11.29	삭제	2004.12.10	등기>
4.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2004.11.29	삭제	2004.12.10	등기>
1.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2004.11.29	추가	2004.12.10	등기>
1.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개발업	<2021.12.01	변경	2021.12.14	등기>
2. 컴퓨터 시설관리업	<2004.11.29	추가	2004.12.10	등기>
1. 전시관, 박물관, 공연시설, 유원지 및				
	<2021.12.01	추가	2021.12.14	등기>
1. 전시관, 박물관, 공연시설, 유원지 및				
0-1	<2021.12.14	경정	2021.12.16	• ,
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2004.11.29	추가	2004.12.10	0 ,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2021.12.01	변경	2021.12.14	
4.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004.11.29	추가	2004.12.10	0 ,
1. 컴퓨터 시설관리업	<2021.12.01	변경	2021.12.14	
5.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2004.11.29	추가	2004.12.10	등기>
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2021.12.01	변경	2021.12.14	0 ,
<u> 6. 인테리어 디자인업</u>	<2004.11.29	추가	2004.12.10	· ,
1.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021.12.01	변경	2021.12.14	0 ,
7. 제품 디자인업-	<2004.11.29	추가	2004.12.10	등기>
1.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2021.12.01	변경	2021.12.14	· ,
8. 시각 디자인업 ·	<2004.11.29	추가	2004.12.10	0 '
1. 인테리어 디자인업	<2021.12.01	변경	2021.12.14	등기>
9. 기타 전문 디자인업 ·	<2004.11.29	추가	2004.12.10	등기>
1. 제품 디자인업	<2021.12.01	변경	2021.12.14	등기>
1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2004.11.29	추가	2004.12.10	· ,
1. 시각 디자인업	<2021.12.01	변경	2021.12.14	등기>
11. 지주회사	<2004.11.29	추가	2004.12.10	등기>

등기번호	303895						
1. 기타 전	문 디자인업			<2021.12.01	변경	2021.12.14	등기>
12. 여행시	및 기타 여행 보조	업		<2004.11.29	추가	2004.12.10	등기>
				<2020.03.31	삭제	2020.08.14	등기>
13. 기타 9	<u> </u>	1런 산업		<2004.11.29	추가	2004.12.10	등기>
12. 기타 9	<u>오락, 문화 및 운동</u> 된	1런 산업 -		<2020.03.31	변경	2020.08.14	등기>
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2021.12.01	변경	2021.12.14	등기>
14. 광고 다	 행업 			<2004.11.29	추가	2004.12.10	등기>
13. 광고 다]] 행업			<2020.03.31	변경	2020.08.14	등기>
1. 지주회사	}			<2021.12.01	변경	2021.12.14	등기>
15. 광고물	작성업			<2004.11.29	추가	2004.12.10	등기>
14. 광고물				<2020.03.31	변경	2020.08.14	
1. 기타 오	락, 문화 및 운동 된	<u></u> 관련 사업		<2021.12.01	변경	2021.12.14	등기>
	및 비디오 제작업			<2004.11.29	추가	2004.12.10	• ,
	및 비디오 제작업			<2020.03.31	변경	2020.08.14	- '
1. 광고 대				<2021.12.01	변경	2021.12.14	등기>
	및 비디오 제작관련			<2004.11.29	추가	2004.12.10	• ,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2020.03.31	변경	2020.08.14	
1. 광고물				<2021.12.01	변경	2021.12.14	
	영 및 처리업			<2004.11.29	추가	2004.12.10	1
	영 및 처리업			<2020.03.31	변경	2020.08.14	
	비디오 제작업			<2021.12.01	변경	2021.12.14	· '
19. 경영상				<2004.11.29	추가	2004.12.10	등기>
18. 경영상				<2020.03.31	변경	2020.08.14	
	비디오 제작관련 시	네비스업	7	<2021.12.01	변경	2021.12.14	등기>
	하계관련 서비스업	O-I		<2004.11.29	추가	2004.12.10	
	하계관련 서비스업	\overline{a}	T	<2020.03.31	변경	2020.08.14	
	병 및 처리업			<2021.12.01	변경	2021.12.14	- '
	용 건물 임대업			<2004.11.29	추가	2004.12.10	- '
	용 건물 임대업			<2020.03.31	변경	2020.08.14	
1. 경영상당				<2021.12.01	변경	2021.12.14	
	용 부동산 관리업			<2004.11.29	추가	2004.12.10	등기>
	용 부동산 관리업			<2020.03.31	변경	2020.08.14	등기>
	계관련 서비스업			<2021.12.01	변경	2021.12.14	
	사 및 여론조사업			<2004.11.29	추가	2004.12.10	- '
	사 및 여론조사업			<2020.03.31	변경	2020.08.14	- '
	용 건물 임대업	וא		<2021.12.01	변경	2021.12.14	- '
	<u>인쇄 및 기록매체 복</u>			<2004.11.29	추가	2004.12.10	
	<u>인쇄 및 기록매체 복</u>	제됩		<2020.03.31	변경	2020.08.14	등기>
	임대 및 매매업) -n		<2021.12.01	변경	2021.12.14	등기>
	항에 부대되는 사업 약			<2004.11.29	변경	2004.12.10	등기>
—	콘텐츠 제작 및 개통			<2017.09.12	추가	2017.09.26	등기>
24.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개통	1 日		<2020.03.31	변경	2020.08.14	등기>

등기번호	303895					
1. 시장조시	나 및 여론조사업		<2021.12.01	변경	2021.12.14	등기>
26. 전시장	차 설치서비스업		<2017.09.12	추가	2017.09.26	등기>
25. 전시장	차 설치서비스업		<2020.03.31	변경	2020.08.14	등기>
1. 출판, 약	<u></u>	제업	<2021.12.01	변경	2021.12.14	등기>
27. 전시 및	및 행사 대행업		<2017.09.12	추가	2017.09.26	등기>
26. 전시 및	및 행사 대행업		<2020.03.31	변경	2020.08.14	등기>
1. 전시장치	1 설치서비스업		<2021.12.01	변경	2021.12.14	등기>
28. 위 각 형	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 체ー	<2017.09.12	변경	2017.09.26	등기>
27. 위 각 형	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	[체	<2020.03.31	변경	2020.08.14	등기>
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2021.12.01	변경	2021.12.14	등기>
1. 종합 도			<2021.12.01	추가	2021.12.14	등기>
		ŀ전, 가구, 문구류,	기타 각종 상품의 저		·공, 도소매,	중개
및 위탁 핀			<2021.12.01	추가	2021.12.14	등기>
	등 판매업 및 카페운		<2021.12.01	추가	2021.12.14	등기>
	식점 및 일반 음식점	l 업	<2021.12.01	추가	2021.12.14	등기>
1. 자동판미	내기 운영업		<2021.12.01	추가	2021.12.14	등기>
1. 무역업			<2021.12.01	추가	2021.12.14	등기>
1. 상표권,	브랜드 등 지적재선	<u> 권</u> 의 라이선스업	<2021.12.01	추가	2021.12.14	등기>
1. 전 각 호	호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	<2021.12.01	추가	2021.12.14	등기>
1. 저작권	대리 중개업		<2022.04.29	추가	2022.05.03	등기>
1. 전 각 호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	[체	<2021.12.01	변경	2021.12.14	등기>
1. 전 각 호	호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2022.04.29	변경	2022.05.03	등기>
1. 전 각 호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	[체	<2022.04.29	변경	2022.05.03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김준한 730726-*****	
2007 년 06 월 28 일 중엄 2007 년 07 월 11 일 등기	
시내이사 김준한 730726-*****	
2010 년 06 월 28 일 중임 2010 년 07 월 16 일 등기	
2013 년 06 월 28 일 퇴임 2014 년 07 월 09 일 등기	
이사 최은석 731231-*****	
2007 년 06 월 28 일 중임 2007 년 07 월 11 일 등기	
사내이사 최은석 731231-*****	
2010 년 06 월 28 일 중임 2010 년 07 월 16 일 등기	
2012 년 02 월 17 일 사망 2012 년 04 월 30 일 등기	
이사 한성주 740923-*****	
2006 년 12 월 21 일 해임 2006 년 12 월 21 일 등기	
대표이사 김준한 730726-*****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 신반포14차아파트 217-614	
대표이사 김준한 7307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아파트 107-602	
2007 년 02 월 12 일 주소변경 2007 년 07 월 11 일 등기	
2007 년 06 월 28 일 중임 2007 년 07 월 11 일 등기	
2008 년 04 월 15 일 사임 2008 년 04 월 18 일 등기	
대표이사 최은석 731231-*****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7-8. 302호	

등기번호	303	3895							
대표이사 최	나는석 73.	1231-***	**** 서울	특별시 동	작구	신대방	동 33	39-1	그린빌라트 404호
				2007					· · · · · · · · · · · · · · · · · · ·
				2007 년					
									<u> 동우방아파트 102-1101</u>
				2008					
•									양이과트 6-1201
				2010					
				2010 년					
l e								-)0 한양이파트 6-1201
									20 일 등기
				2012 년					
감사 곽현									
2005 \	현 04 월	15 일	사임	2005 년	04 월	28	일 -	등기	
감사 박기로									
2005 \	년 04 월	15 일	취임	2005 년	04 월	28	일	등기	
2008 \		31 일		- 2008 년	04 월		일		
2008 \	현 04 월			- 2008 년	04 월		일 :	-	
l .				2011 년				등기	
이사 이동								<u> </u>	
	현 04 월			2005 년	04 월	28	일 :	등기	
	현 04 월			2008 년					
	년 04 월			2011 년			일 -		
이사 이병관								<u> </u>	
	년 09 월			2008 년	10 월	09	일	등기	
l e	년 02 월		사임	2010 년				등기	
사외이시 경						-		<u> </u>	
				2010 년	03 월	08	일	등기	
	년 03 월			2012 년				등기	
감사 박기로								<u> </u>	
	년 05 월			2011 년	05 월	20	일	등기	
			사임					등기	
사내이사								<u> </u>	
2011 \		20 일	취임	2011 년	05 월	20	일 -	등기	
2014 \		20 일		2014 년	07 월		일 -		
	현 03 월			2017 년				등기	
사내이사 3									
2011 \		20 일	취임	2011 년	05 월	20	일 -	등기	
2014 \			중임	2014 년	07 월		일 -		
2017 \		24 일	사임	2017 년	04 월			등기	
공동대표이				서울특별/					79-1 성수동양아파트 102-903
2011 \		20 일	취임	2011 년	05 월			등기	
2013 \	년 06 월	05 일		2013 년			일 -		

등기번호		3038	395															
공동대표이	사 김	준한	730	726- *	*****	서울특	별시	동	작구	L 싱	도로	-55길	47,	205동	1404.	호(상)	도동, 리	H
미안상도2 차	아파	E)																
2012 년						2012	년	04	월	30	일	등기						
2013 년						2013	년	06	월	19	일	등기						
사외이사 조																		
2012 년						2012						등기						
2015 년						2015	년	04	월	17	일	등기						
사외이사 ㅎ	. —						,		۵.			. ,						
2012 년						2012						등기						
2015 년	_			일		2015		04				등기						
2018 년				일		2018		04				등기						
2020 년						2020	년	02	월	07	일	등기						
사외이사 경 2012 년						2012	13	04	্ৰা	20	റി	ㄷ기						
2012 E						2012				09		등기 등기						
2014 년 감사 한현철					<u> </u>	2014	1	07		9	르	5/1						
2012 년	-				취인	2012	녆	05	원	02	일	두기						
2012 년 2015 년				일		2012						등기						
2018 년 2018 년		_		일 ~		2018			_		_	등기						
_	_	_			해임	2020	_		_		_							
공동대표이,												-	1 26,	102 5	2604	4호(성	수동27	}
, 서울숲힐										·							, -	·
2012 년	08	월	21	일	취임	2012	년	08	월	28	일	등기						
대표이사 ㅇ	동훈	730	128-	****	*** 서울	특별시	성	동구	성	수일	로4	길 26	, 102	동 26	04호(성수동	27], ×	}
울숲힐스테	이트)				\bigcirc		T	_ ا	-			4						
2013 년	06	월	05	일 -	공동대표	규정폐	기		2013	3 년	. 06	3 월	19 Ş	일 등	기			
					중임													
대표이사 이		7304	128-	****	*** 제주	특별기	치도	- 제	주시	한	림읍	급등	남로	127,	215동	3023	호(라온	<u>77</u>
라이빗타운																		
					주소변경											_	- / 3 4	
대표이사 •		7304	128-	****	** 제주	특별기	치도	제	子入	힌	림읍	급등	남로	127,	220 동	6023	호(라온	$\overline{\Omega}$
라이빗타운		٥١		۸۱ -	7 2 2 2 2			. 1	0.0	٥١	0.0	۸۱	ı					
1					주소변경								능기					
2017 년						2017	년	04	철	07	일	등기						
<u>사외이사 오</u>						2012	1.3	00	ଠା	20	റി	ㄷᅱ						
2013 년 2014 년	_	_	18		취임	2013						등기						
2014 년 사외이사 o						2014	넌	10	겯	10	겉	등기						
기위이자 0 2013 년			206- 18		*** 취임	2013	uđ	00	월	20	6]	등기						
2013 년 2016 년				일 =		2013		02				등기 등기						
2010 E				크 일 ²	- •	2010		03			_	등기						
2019 E						2019						등기						
<u> </u>	i OT	븐	υI	린 /	<u>'l 口</u>	<u> 4040</u>	il.	UZ	븐	U1	근	0/1						

등기번호	303	3895						
사외이사 이	L)2()9-***	<u> </u>					
1 ' ' ' '	년 03 월			2014 년	07 월	09	일 등	7]
	년 03 월			2017 년				•
사내이사 7					·······························			
2014 \	년 05 월	20 일	취임	2014 년	07 월	09	일 등기	7]
2017 \	년 03 월	24 일	사임	2017 년	04 월	07	일 등	7
사외이사 1	<u> </u>)327-***	****					
2014 \	년 10 월	01 일	취임	2014 년	10 월	10	일 등	7]
2017 님	년 03 월	24 일	사임	2017 년	04 월	07	일 등	7
사외이사 5	2성권 77()124-***	****					
2015 님	년 03 월	30 일	취임	2015 년	04 월	17	일 등기	7]
2017 \	년 03 월	24 일	사임	2017 년	04 월	07 9	일 등기	7]
사내이사 ㅇ	이성호 800)315-***	****			-		
1	년 10 월			2016 년				•
1	년 10 월				11 월		_	•
	년 10 월			2022 년				
1)7동 2103호(잠실동, 트리지움)
l				2016 년			_	•
l l			중임					
								221동 1901호(잠실동, 리센츠)
				2020				
				2022 년	11 월	04	일 등기	7]
사내이사 ㅇ								_
				2017 년				
				2020				
)428-***	**** 제수	특별자치도	- 제주기	나 한 [†]	림읍 금	'능남로 127, 220동 602호(라온프
라이빗타운								
1				2017 년			_	•
)428-***	**** 서울	두멸시 광	진구 광	나무그	로46길	<u>21, 101동 609호(구의동, 구의동</u>
현진에버빌		40.41	7 1 1 2	2010	- 1 - 40	٥١	40.41	- 1
				2018				
			임기만료	2020	년 09	월	24 일	등기
사내이사 7				0017 13	04 01	07.	5) E-	7]
				2017 년				
			임기만료	2020	년 09	둳	24 일	<u> </u>
사내이사 최				0017 13	04 01	07.0	ก ๒-	7]
			취임 임기만료	2017 년 2020				
2020 년 사외이시 발					년 09	멸	∠4 일	<u>\(\sigma\) \(\sigma\) \(\sigma\)</u>
1 ' ' ' '	, _ ,			2017 년	04 의	07 (이 도-	7]
2017 년 사외이사 변				4017 년	U4 결	U/	린 궁/	' I
				201	7 Ld 0	14 위	10 01	l 드기
<u> </u>	」 ∪4 邑	01 린	0 0 0 0	5 401	<i>i</i> 1 ∪	ㅋ 된	10 世	5 0/1

등기번호	303895						
2018 남			2018 년	04 월	12 일	등기	
사외이사 이하병 810720-******							
2017 년			2017 년				
	크 01 월 31 일		2020 년	02 월	07 일	등기	
	·동준 791007-**						
2017 년		. –	2017 년				
	<u>년 03 월 31 일</u>		2018 년	04 월	12 일	등기	
사외이사 박무상 851211-******* 2018 년 03 월 31 일 취임 2018 년 04 월 12 일 등기							
l .							
	년 01월 31일		2020 년	02 월	07 일	등기	
	<u></u>		2010 11	04 0]	10.6	r_1	
	년 03 월 31 일		2018 년				
	<u>년 01 월 31 일</u>		2020 년			등기	
	중화인민공화국인	리칭(LI Q					
•	년 09 월 15 일	취임	2020 년			= '	
	년 07 월 24 일	사임	2023 년		26 일	-	
	마합중국인 유사의						
	년 09월 15일		2020 년				
	면 07월 20일		2023 년				
	<u> 민공화국인 청년</u>	•					
2020 년			2020 년	09 월	24 일		
	년 04 월 29 일		2022 년	05 월	03 일	- 등기	
	引 800528-*****		0000 13	ارم ما	ററ റി	E -1	
	년 04 월 29 일		2022 년	05 혈	03 일	<u> </u>	
	1 801008-*****		0000 14	05 01	വ വ	E 7	
	년 04 월 29 일 후 780115-*****		2022 년	- 05 필	03 일	등기	
	를 780115-***** 년 03 월 27 일		2023 년	OE 9]	റ1 റി	등기	
	<u>년 03 월 27 월</u> 기동훈 730428-**		2023 년	00 결	01 일	<u>5/1</u>	
	기 능 군 730426-** 년 08 월 04 일		2023 년	ററ ലി	റെ റി	こり	
	<u> 1 00 월 04 월</u> 남준한 730726-**		2023 연	09 包	<i>2</i> 0 ∃	8/1	
	크군안 730720-** 년 08 월 04 일		2023 년	00 원	26 Ol	드기	
	<u>년 06 월 04 월</u> 위은석 750122-**		4043 전	US 包	40 현	0/1	
	계근적 750122-** 년 08 월 04 일		2023 년	NO 위	26 OI	등기	
	<u>년 08 월 04 월</u> 기상진 770227-**		4040 건	0.5 包	40 로	0 / 1	
	년 08 월 04 일		2023 년	00 원	26 일	등기	
	<u>- 08 월 04 글</u> 박상화 771225-**		4040 <u>1</u>	00 包		0 / 1	
1	년 08 월 04 일		2023 년	00 원	26 의	두기	
	<u>로 00 월 04 로</u> 중화인민공화국인						
	년 04 월 25 일		1(30 AIAO 2024 년				
	<u>. 01 2 20 2</u>	יו ע	202 F L	OI 근	~ 근	U 1 I	

종류주식의 내용

상환우선주식

1. 기본 정보

1.1 일반사항: 상환우선주식(이하 "본건 상환우선주식")은 배당금의 지급 및 본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 이며, 아래 기재된 상환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1.2 주식 배정: 주식 발행 또는 주식 배당 시.

회사는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에게 발행 또는 배당 예정인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주식을 배정하며.

<u>다만 무상증자의 경우 회사는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에게</u> 본건 상환우선주식과 동일한 조건의 종류주식을 배정한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상환우선주식의 보유자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3. 이익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3.1 우선 배당을: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는 회사의 보통주 보유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권리가 있으며.

포하기 포기자에 기간에서 배경을 받을한다기 쓰스러, 연간 최저 우선 배당율은 본건 상환우선주식의 주당 발행

가액(주식배당, 주식분할 또는 병합, 본건 상환우선주식에 관하여 이와 유사한 기타 자본재구성이 있는 경우 적절하게

조정됨)의 [12%]로 한다.

3.2. 배당방식: 본건 상환우선주식은 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로, 어느 회계연도에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가 우선배당율에 근거하여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 미만으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러한 모든 해당 미지급 배당금의 누적액분은 다음 회계연도의 보통주에 대한 배당에 우선하여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에게 배당된다(명확히 하면, 발생한 모든 우선 배당금이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에 대해 전액 지급 결의 및 지급되고, 이에 관해 회사의 이익이 적법하게 배당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보통주에 대해 어떠한 배당도 결의될 수 없다)

3.3 배당기준일: 배당금 배당목적 상, 본건 상환우선주식은 본건 상환우선주식이 발행된 회계반기의 초일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3.4 배당금 지급 시기: 배당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본건 상환우선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기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에게 해당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결의된 그 각자의 몫을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 1개월의 기간 종료 직후일로부터 결의된 미지급 배당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6%]로 계산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한다.

4.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열람일시 : 2024년05월29일 14시53분57초

303895

청산 시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회사는 보통주 보유자에게 분배하기 전에, 본건 상화우선주식 보유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본건 상환우선주식 1주당 (a) 본건 상환우선주식의 주당 발행 가액(주식 배당, 주식 분할, 병합 또는 본건 상환우선주식에 관해 이와 유사한 기타 자본재구성이 있는 경우 적절하게 조정됨) 및 (b) 3. 이익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에 따라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의 합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5. 상화권에 관한 사항 5.1 상환청구권: 본 상환권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는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본건 상환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 건 상환 우선주식을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의 효력은 상환권을 행사하는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에 대해 실제로 관련 상환금이 지급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5.2 상환기간: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a)적격 기업공개일 및 (b)2027년 12월 31일(이하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날까지 본건 상화우선주식에 대한 상화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Event of Default (채무불이행)발생시,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만기일까지 본건 상환우선주식을 상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5.3 상환가액: 본건 상환우선주식의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상화우선주식 최초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화일까지 본건 상환우선주식 주당 인수가액(주식배당, 주식분할, 병합 또는 본건 상환우선 주식에 관해 이와 유사한 기타 자본재구성이 있는 경우 적절하게 조정됨)에 대하여 [12%]의 IRR(내부수익율)을 제공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23. 1. [30]. 자 신주인수계약서 제8.8조 위반 이후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본건 상환우선주식의 주당 상환가액은 본거 상화우선주식 최초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화일까지 본건 상화우선주식 주당 인수가액(주식배당, 주식분할, 병합 또는 본건 상환우선주식에 관해 이와 유사한 기타 자본재구성이 있는 경우 적절하게 조정됨)에 대하여

303895

[16%]의 IRR(내부수익율)을 제공하는 금액으로 한다.

5.4 상환방법: 상환이 청구된 본건 상환우선주식은

해당 상환청구일로부터 15일 후 (명확히 하면,

상환청구일로부터 15일 후에 해당하는 날을 포함함)

까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5.5 만기 시 상환: 만기일에 회사는 잔존하는 모든 본건

상화우선주식을 그 시점에 적용되는 상화가액으로 상화한다.

다만,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잔존하는 본건 상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안분비례하여 관련 법령상

상환이 허용되는 최대 수의 본건 상환우선주식을 상환하며,

나머지 주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상환할 수 있게 되는 대로 조속히 상환한다.

명확히 하면,

위와 같이 상환이 지연된 본건 상환우선주식에 대한 상환가액은

그 실제 상환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2023 년 02 월 02 일 설정 2023 년 02 월 13 일 등기

- 1. 기본 정보
- 1.1 일반사항: 상환우선주식(이하 "본건 상환우선주식")은 배당금의 지급 및 본 회사의 청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이며, 아래 기재된 상환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 1.2 주식 배정: 주식 발행 또는 주식 배당 시, 회사는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에게 발행 또는 배당 예정인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주식을 배정하며, 다만, 무상증자의 경우 회사는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에게 본건 상환우선주식과 동일한 조건의 종류주식을 배정한다.
-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상환우선주식의 보유자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3. 이익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3.1 우선 배당율: 본건 상환우선주식의 보유자는 회사의 보통주 보유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연간 최저 우선 배당율은 주당 25,000원(주식배당, 주식분할 또는 병합, 본건 상환우선주식에 관하여 이와 유사한 기타 자본재구성이 있는 경우 적절하게 조정됨)의 12%로 한다.
- 3.2 배당방식: 본건 상환우선주식은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로, 어느 회계연도에 본건 상환 우선주식 보유자가 우선배당율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 미만으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 우, 모든 해당 미지급 배당금의 누적액분은 다음 회계연도의 보통주에 대한 배당에 우선하여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에게 배당된다(명확히 하면, 발생된 모든 우선 배당금이 본건 상환 우선주식 보유자에 대해 전액 지급 결의 및 지급되고 이에 관해 회사의 이익이 적법하게 배당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보통주에 대해 어떠한 배당도 결의될 수 없다).
- 3.3 배당기준일: 배당금 배당목적 상, 본건 상환우선주식은 본건 상환우선주식이 발행된 회계 반기의 초일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 3.4 배당금 지급 시기: 배당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본건 상환우선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 시기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에게 해당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결의된 그 각자의 몫을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 1개월의

303895

- 기간 종료 직후일로부터 결의된 미지급 배당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6%로 계산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한다.
- 4.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청산 시 회사의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회사는 보통주 보유자에게 분배하기 전에,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본건 상환우선주식 1주당 (a) 25,000원(주식 배당, 주식 분할, 병합 또는 본건 상환우선주식에 관해 이와 유사한 기타 자본재구성이 있는 경우 적절하게 조정됨) 및 (b) 3.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권에 관한 사항에 따라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의 합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5. 상환권에 관한 사항
- 5.1 상환청구권: 본 상환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는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본건 상환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상환우선주식을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의 효력은 상환권을 행사하는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에 대해 실제로 관련 상환금이 지급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5.2 상환기간: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a) Qualified IPO의 날(적격 기업공개일)과 (b) 2027년 12월 31일(이하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본건 상환우선주식에 대한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Event of Default(채무불이행) 발생시, 본건 상환우선주식 보유자는 이후 언제든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만기일까지 본건 상환우선주식을 상환하기로 결정할수 있다.
- 5.3 상환가액: 본건 상환우선주식의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상환우선주식 최초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25,000원(주식배당, 주식분할, 병합 또는 본건 상환우선주식에 관해 이와 유사한 기타 자본재구성이 있는 경우 적절하게 조정됨)에 대하여 12%의 IRR(내부수익율)을 제공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23. 1. 30. 자 신주인수계약서 제8.8조 위반 이후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본건 상환우선주식의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상환우선주식 최초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25,000원(주식배당, 주식 분할, 병합 또는 본건 상환우선주식에 관해 이와 유사한 기타 자본재구성이 있는 경우 적절하게 조정됨)에 대하여 16%의 IRR(내부수익율)을 제공하는 금액으로 한다.
- 5.4 상환방법: 상환이 청구된 본건 상환우선주식은 해당 상환청구 일로부터 15일 후(명확히하면, 상환청구일로부터 15일 후에 해당하는 날을 포함함)까지 현금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5.5 만기 시 상환: 만기일에 회사는 잔존하는 모든 본건 상환우선주식을 그 시점에 적용되는 상환가액으로 상환한다. 다만,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가능한 이익의 부족 또는 기타 사유로 잔존하는 본건 상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안분비례하여 관련 법령상 상환이 허용되는 최대 수의 본건 상환우선주식을 상환하며, 나머지 주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상환할 수 있게 되는대로 조속히 상환한다. 명확히 하면, 위와 같이 상환이 지연된 본건 상환우선주식에 대한 상환가액은 그 실제 상환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2023 년 04 월 29 일 변경 2023 년 05 월 01 일 등기

기 타 사 항

1. 주식의 양도

303895

주식의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8 년
 09 월
 25 일
 설정
 2008 년
 10 월
 09 일
 등기

 2012 년
 12 월
 21 일
 말소
 2013 년
 01 월
 03 일
 등기

1. 상환주식

①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자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 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 ③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 ①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⑤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 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2.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 진 경우
- 3.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 부적정, 의건거절일 경우
- 5.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6.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2011 년 06 월 22 일 변경 2011 년 06 월 27 일 등기
 - 2019 년 12 월 17 일 말소 2019 년 12 월 26 일 등기

1. 전환주식

①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라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303895

②전화방법은 다음과 같다.

- 1.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 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 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 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③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1.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 2.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 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체(전환사체, 신주인수권부사체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체)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 3.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 $Ni = Bi \times \{(Ac/Bc)-1\}$
- Ni: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 Bi: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 B: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A: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4.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 5.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 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6.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 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④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⑤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2011 년 06 월 22 일 변경 2011 년 06 월 27 일 등기 2019 년 12 월 17 일 말소 2019 년 12 월 26 일 등기
- 1. 발행주식의 내용
 - (1)의결권에 관한 사항

303895

- ①제2차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제2차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제2차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제2차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경우 존속기간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 (2)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제2차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제2차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0]%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 ③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제2차우선주식의 인수인은 제2차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 년도의직전영업년도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경우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 월이내에 제2차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 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하기로 한다.
- ④제2차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전까지의 기간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미지급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3)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제2차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8]%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이전까지 미지급배당금이 있는 경우동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제2차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분배를 한후 보통주에 대한주당분배금액이 제2차우선주식에 대한 주당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2차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 2011 년 08 월 18 일 변경 2011 년 08 월 18 일 등기 2019 년 12 월 17 일 말소 2019 년 12 월 26 일 등기

1. 상환주식

①상환청구권: 제2차우선주식의 주주는 제2차우선주식의 납입기일다음날(발행일, 제2차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 따라 제2차우선주식의 전부또는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제2차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제2차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 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나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303895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상환조건: 제2차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제2차우선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 ③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 ④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제2차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제2차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⑤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제2차우선주식의 주 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기한 전 상환: 제2차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시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제2항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자산을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2.제2차우선주식발행 및 인수관련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것으로 밝혀진경 우
- 3.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등의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회사 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5.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6.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7. 투자계약서의 제14조를 위반하는 경우
 - 2011 년 08 월 18 일 변경 2011 년 08 월 18 일 등기 2019 년 12 월 17 일 말소 2019 년 12 월 26 일 등기

1. 전환주식

①전환기간: 제2차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경과일전일 까지(또는 존속기간말일전일까지) 언제든지 제2차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2차우선주식의 주주는 제2차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제2차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 된다.

- ②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 1.제2차우선주식의 주주는 제2차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전환하고자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전환청구를 한경우 전환은, 제2차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제2차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종료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제2차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회사는 제2차우선주식의주권을 인도받은후, 가능한한 신속하게 당해 제2차우선주식의 주주

303895

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③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1.제2차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 2.회사가 제2차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제2차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 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체(전환사체, 신주인수권부사체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체)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 3.제2차우선주식의 발행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제2차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 $Ni = Bi \times \{(Ac/Bc)-1\}$
- Ni: 제2차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 Bi: 발행전 제2차우선주식의 주주보유 우선주식수
- B: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A: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4.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제2차우선주식의 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제2차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 한다.
- 5.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제2차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6.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④미발행수권주식의유보: 제2차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제2차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⑤기타: 전환주식의발행, 전환의청구, 기타전환에관한사항은상법제346조 내지제351조의 규정을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2011 년 08 월 18 일 변경 2011 년 08 월 18 일 등기 2019 년 12 월 17 일 말소 2019 년 12 월 26 일 등기
- 1. 발행주식의 내용
 - 제3우선주는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이래와 같다.
 -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 (1)제3차우선주는 "피투자기업"의 주주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2)제3차우선주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전에 대하여 제3차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3) 제3차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다.

303895

- 2) 배당금에 관한 사항
- (1)제3차우선주는 보통주의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2)주식배당의 경우 제3차우선주에 대해서는 제3차우선주의 주주의 요청에 따라 제3차우선주의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제3차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한다.
- 3)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 (1) "피투자기업" 이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제3차우선주의 주주는 인수금액 총액, 미지급된 배당금 및 이에 대하여 연 복리 [8]%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원(다만, 제3차우선주에 대하여 발행일부터 청산 이전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 (2)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제3차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제3차우선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2011 년 11 월 30 일 변경 2011 년 11 월 30 일 등기 2019 년 12 월 17 일 말소 2019 년 12 월 26 일 등기

상환주식

- (1)제3차우선주의 주주는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제3차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피투자기업"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 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 상환청구기간 : "피투자기업"에 대해 제3차우선주 발행일로부터 3년 내에(다만, "피투자기업"과 "투자자"가 합의하는 경우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투자기업" 발행 보통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키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후 제3차우선주 존속기간 내 언제든지 "피투자기업"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상환방법 :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상환
- 3.주당 상환가액: 제3차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팔퍼센트(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제3차우선주에 대하여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 4. "투자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상환가액을 지급받는 즉시 상환가액에 해당하는 상환 대상 제3차우선주의 주권을 "피투자기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 "피투자기업" 이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투자기업" 은 상환을 하여 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위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이십퍼센트(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1 년 11 월 30 일 변경 2011 년 11 월 30 일 등기 2019 년 12 월 17 일 말소 2019 년 12 월 26 일 등기

1. 전환주식

(1)제3차우선주의 주주는 제3차우선주 발행일 익일로부터 10년 경과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까지)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는 제3차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차우선주식의 주주는 제3차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제3차우선주는 그 만료일 다음날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전환의 효력은 제

303895

3차우선주의 주주가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행사통지서를 "피투자기업"에 송부하고 "피투 자기업"이 이를 수령한 날의 영업종료시점에 발생한다. 제3차우선주의 전환시 발생하는 보통 주의 단주는 이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정가격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전환비율

- 1.제3차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이하에서 전환가격은(제3차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전환비율)을 말하고, 제3차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은 제3차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을 말한다}.
- 2. "피투자기업" 이 제3차우선주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제3차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체(전환사체, 신주인수권부사체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체)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 3.제3차우선주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제 3차우선주의 주주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제3차우선주의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times \{(A/B)-1\}$

- Ni: 제3차우선주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 Bi: 발행 전 제3차우선주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 B: 발행 전 "피투자기업"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A: 발행 후 "피투자기업"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4. "피투자기업"이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제3차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제3차우선주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 5.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제3차우선주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6. "피투자기업"이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7. "피투자기업"의 상장("피투자기업"의 보통주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 공모가격을 30% 할인한 가격(이하 "공모가격의 할인가격"이라 한다)이 상장 직전의 제3차우선주의 전환가격(본 항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격을 말하며,이하 본 호에서 "조정된 전환가격"이라 한다.)을 하회하는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에 72/85를 곱한 금액(예를 들면, "조정된 전환가격"이 금 팔천오백원일 경우 금 칠천이백원)을 한도로 하여 전환가격을 공모가격의 할인가격으로 조정하고 전환가격의 조정에 따라 제1호의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 8. 명시하지 않았으나 합리적으로 보아 전환비율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에 불리하지 않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하기로 한다.
- 9.정해진 전환비율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 (3)(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제3차우선주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피투자기업"이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제3차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4)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인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303895

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2011 년 11 월 30 일 변경 2011 년 11 월 30 일 등기 2019 년 12 월 17 일 말소 2019 년 12 월 26 일 등기

1. 발행주식의 내용

-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본 제4차우선주의 주주는 주식 1주당 보통주의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본 제4차우선주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 제4차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본 제4차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0]%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 배당률이 우선주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적으로 배당 받는다.
- ②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 ③이익배당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본 제4차우선주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나한 경우 피투자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투자기업은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투자기업은 그 기간만 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자급하기로 한다.
- ④본 제4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자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투자기업이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피투자기업이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 제4차우선주 인수대금 과 이에 대하여 연 [8]%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 주 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본 제4차우선주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 제4차우선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제4차우선주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개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2013 년 01 월 31 일 변경 2013 년 01 월 31 일 등기 2019 년 12 월 17 일 말소 2019 년 12 월 26 일 등기

1. 상환주식

①(상환권 청구기간) 투자자는 본 제4차우선주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 제4차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피투자기업은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 제4차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피투자기업은 동 자금을 투자자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

303895

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권의 청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상환 조건) 투자자가 본 제4차우선주의 존속기간 내에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피투자기업은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투자자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 ③(상환 이율 및 상환대금) 본 제4차우선주 1주당 상환가액은 본 우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8]%(연복라)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지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총 상환가액에서 상환권 청구대상 우선주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④(지연배상금) 피투자기업이 상환가능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청구한 상환가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은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상환대금에 대하여 연 [20]%(연복라)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 년 01 월 31 일 변경 2013 년 01 월 31 일 등기 2019 년 12 월 17 일 말소 2019 년 12 월 26 일 등기

1. 전환주식

- ①(전환권 청구기간) 투자자는 본제4차우선주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언제든지 본 제4차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본제4차우선주의 주주는 본제4차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제4차우선주는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 ②(전환 방법) 1.투자자는 우선주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수,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또는서명날인하고 피투자기업에 제출한다.(주권이 발행된 경우 이를 첨부) 2.투자자가 우선주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우선주전환청구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피투자기업은 본제4차우선주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 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투자자를 주주명부에 등 제하여야 한다.
- 5.전환과 관련된 절차의 진행등 모든사항은 피투자기업이 담당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결과를 투자자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한다.
- ③(전환 비율 및 전환가액의 조정)1. 본제4차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를 의미하며 발행시 전환비율은 1로 한다.
- 2.(실적에 따른 조정) 피투자기업의 2013년및2014년 감사보고서(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의해 적정의건을 받은 감사보고서 근거)상의 영업이익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전환비율을 조정한다.영업이익의 합리적산정을 위하여 피투자기업은 감가상각 및 개발비상각 방법 등 결 산조정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 *2013년및2014년 영업이익합계-54억원초과, 조정후전환가액-7,700원당1주, 1주당전환비율(소수점넷째자리반올림)-1.0694:1
- *2013년및2014년 영업이익합계-44억원이상 54억원미만, 조정후전환가액-7,200원당1주, 1주당 전환비율(소수점넷째자리반올림)-1:1
- *2013년밎2014년 영업이익합계 39억원이상 44억원미만, 조정후전환가액 6,700원당1주, 1주당

303895

전환비율(소수점넷째자리반올림)-0.9305:1

- *2013년및2014년 영업이익합계-34억원이상 39억원미만, 조정후전환가액-6,200원당1주, 1주당 전환비율(소수점넷째자리반올림)-0.8611:1
- *2013년및2014년 영업이익합계-29억원이상 34억원미만, 조정후전환가액-5,700원당1주, 1주당 전환비율(소수점넷째자리반올림)-0.7917:1
- *2013년및2014년 영업이익합계-29억원 미만, 조정후전환가액-5,200원당1주, 1주당전환비율(소수점넷째자리반올림)-0.7222:1
- 3.피투자기업이 그 당시의 본제4차우선주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체(전환사체,신주인수권부사체및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체)를 발행할경우 , 본제4차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조정한다.
- 4. 본제4차우선주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우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로 발행주식수 증가 전후로 동일한 지분을 유지하도록 무상지급을 받는다. 투자자에게 무상지급되는 우선주의 수는 다음과 같다.
- $Ni = Bi \times \{(Ac/Be)-1\}$
- Ni : 본 우선주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수
- Bi : 발행 전 본 우선주의 주주 보유 우선주수
- Bc : 발행 전 피투자기업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Ac : 발행 후 피투자기업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5.(합병에 따른 조정)피투자기업이 타시와 합병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1주당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제4차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제4차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평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 6.피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또는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 제4차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7.피투자기업이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단, 경영과 실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 지 않기로 한다.
- ④본제4차우선주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피투자기업이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 제4 차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⑤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다만,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및전환으로 발행된 우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2013 년 01 월 31 일 변경 2013 년 01 월 31 일 등기 2019 년 12 월 17 일 말소 2019 년 12 월 26 일 등기
- 1. 발행주식의 내용
 - 1)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본 제5차우선주의 주주는 주식 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본 제5차우선주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 에 대하여 본 제5차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2)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303895

①본 제5차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0%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 배당률이 우선주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적으로 배당 받는다.

②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③이익배당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본 제5차우선주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나한 경우 피투자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아내에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투자기업은 위 시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투자기업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④본 제5차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투자기업이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3)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퍼투자기업이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 제5차우선주 인수대금 과 이에 대하여 연 8%(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본 제5차우선주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 제5차우선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제5차우선주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2013 년 04 월 25 일 변경 2013 년 04 월 25 일 등기

1)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본 제5차우선주의 주주는 주식 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본 제5차우선주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 제5차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019 년 11 월 08 일 변경 2019 년 12 월 16 일 등기 2020 년 04 월 23 일 말소 2020 년 05 월 07 일 등기

상환주식

①(상환권 청구기간) 투자자는 본 제5차우선주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 제5차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피투자기업은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 제5차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피투자기업은 동 자금을 투자자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아나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권의 청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상환 조건) 투자자가 본 제5차우선주의 존속기간 내에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피투자기업은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투자자의 상

303895

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 ③(상환 이율 및 상환대금) 본 제5차우선주 1주당 상환가액은 본 제5차우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8%(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총 상환가액에서 상환권 청구대상 우선주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④(지연배상금) 피투자기업이 상환가능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청구한 상환가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은 본조 2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상환대금에 대하여 연 20%(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13 년 04 월 25 일 변경 2013 년 04 월 25 일 등기 2019 년 11 월 08 일 말소 2019 년 12 월 16 일 등기

1. 전환주식

- ①(전환권 청구기간) 투자자는 본 제5차우선주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한 날로부터 7년 경과 일 전일까지 (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 제5차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전환 방법) 1.투자자는 우선주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피투자기업에 제출한다(주권이 발행된 경우 이를 첨부한다).
- 2. 투자자가 우선주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우선주전환청구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피투자기업은 본 제5차우선주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투자자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5.전환과 관련된 절차의 진행 등 모든 사항은 피투자기업이 담당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결과를 투자자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한다.
- ③(전환 비율 및 전환가액의 조정)1. 본 제5차우선주발행시 전환비율은 1:1(우선주1주당 보통주1주)로 한다.
- 2. 피투자기업이 그 당시으 본 제5차우선주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체(전환사체, 신주인수권부사체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체)를 발행할 경우. 본 제5차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조정한다.
- 3. 본 제5차우선주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 투자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우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로 발 행주식수 증가 전후로 동일한 지분을 유지하도록 무상지급을 받는다. 투자자에게 무상지급되 는 우선주의 수는 다음과 같다.
- $Ni = Bi \times \{(Ac/Be)-1\}$
- Ni : 본 우선주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수
- Bi : 발행 전 본 우선주의 주주 보유 우선주수
- Bc : 발행 전 피투자기업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Ac : 발행 후 피투자기업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4. (합병에 따른 조정) 피투자기업이 타사와 합병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1주당 평가가액이

303895

- 그 당시의 본 제5차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 제5차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평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 5.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 제5차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가준으로 한다.
- 6. 피투자기업이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 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 하지 않기로 한다.
- ④본 제5차우선주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피투자기업이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 제 5차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⑤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우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2013 년 04 월 25 일 변경 2013 년 04 월 25 일 등기
- ①(전환권 청구기간) 투자자는 본 제5차우선주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한 날로부터 7년 경과 일 전일까지 (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 제5차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전환 방법) 1.투자자는 우선주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피투자기업에 제출한다(주권이 발행된 경우 이를 첨부한다).
- 2. 투자자가 우선주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우선주전환청구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피투자기업은 본 제5차우선주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투자자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5.전환과 관련된 절차의 진행 등 모든 사항은 피투자기업이 담당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결과를 투자자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한다.
- ③(전환 비율 및 전환가액의 조정)1. 본 제5차우선주발행시 전환비율은 1:1(우선주1주당 보통주1주)로 한다.
- ④본 제5차우선주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피투자기업이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 제 5차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⑤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우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2019 년 11 월 08 일 변경 2019 년 12 월 16 일 등기 2020 년 04 월 23 일 말소 2020 년 05 월 07 일 등기
- 1 발행주식의 내용
 -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본 제6차우선주의 주주는 주식 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303895

②본 제6차우선주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간에 대하여 본 제6차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본 제6차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0%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 배당률이 우선주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적으로 배당 받는다.
- ②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 ③이익배당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본 제6차우선주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나한 경우 피투자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제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아내에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투자기업은 위 시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투자기업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④본 제6차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투자기업이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피투자기업이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 제6차우선주 인수대금 과 이에 대하여 연 8%(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본 제6차우선주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 제6차우선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제6차우선주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2014 년 05 월 30 일 변경 2014 년 05 월 30 일 등기

-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본 제6차우선주의 주주는 주식 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본 제6차우선주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 제6차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2019 년
 11 월
 08 일
 변경
 2019 년
 12 월
 16 일
 등기

 2021 년
 05 월
 29 일
 말소
 2021 년
 06 월
 07 일
 등기

1. 상환주식

①(상환권 청구기간) 투자자는 본 제6차우선주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 제6차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피투자기업은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 제6차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피투자기업은 동 자금을 투자자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이나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권의 청구는

303895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상환 조건) 투자자가 본 제6차우선주의 존속기간 내에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피투자기업은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투자자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 ③(상환 이율 및 상환대금) 본 제6차우선주 1주당 상환가액은 본 제6차우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8%(연복라)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총 상환가액에서 상환권 청구대상 우선주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④(지연배상금) 피투자기업이 상환가능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청구한 상환가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은 본조 2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상환대금에 대하여 연 20%(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출한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14 년 05 월 30 일 변경 2014 년 05 월 30 일 등기 2019 년 11 월 08 일 말소 2019 년 12 월 16 일 등기

1. 전환주식

- ①(전환권 청구기간) 투자자는 본 제6차우선주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한 날로부터 7년 경과일 전일까지 (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 제6차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전환 방법)
- 1.투자자는 우선주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가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피투자기업에 제출한다(주권이 발행된 경우 이를 첨부한다).
- 2. 투자자가 우선주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우선주전환청구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피투자기업은 본 제6차우선주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투자자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5.전환과 관련된 절차의 진행 등 모든 사항은 피투자기업이 담당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결과를 투자자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한다.
- ③(전화 비율 및 전화가액의 조정)
- 1.본 제6차우선주발행시 전환비율은 1:1(우선주1주당 보통주1주)로 한다.
- 2.피투자기업이 그 당시의 본 제6차우선주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경우, 본 제6차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조정한다.
- 3.본 제6차우선주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우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로 발행주식수 증가 전후로 동일한 지분을 유지하도록 무상지급을 받는다. 투자자에게 무상지급되는 우선주의 수는 다음과 같다.
- $Ni = Bi \times \{(Ac/Bc)-1\}$
- Ni : 본 우선주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수
- Bi : 발행 전 본 우선주의 주주 보유 우선주수

303895

Bc : 발행 전 피투자기업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피투자기업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4.(합병에 따른 조정) 피투자기업이 타사와 합병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1주당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 제6차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 제6차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평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5.피투자기업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 제6차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6.피투자기업이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 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 하지 않기로 한다.

④본 제6차우선주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피투자기업이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 제 6차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시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우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2014 년 05 월 30 일 변경 2014 년 05 월 30 일 등기

①(전환권 청구기간) 투자자는 본 제6차우선주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한 날로부터 7년 경과 일 전일까지 (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 제6차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전환 방법)

1.투자자는 우선주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가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피투자기업에 제출한다(주권이 발행된 경우 이를 첨부한다).

2. 투자자가 우선주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우선주전환청구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피투자기업은 본 제6차우선주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투자자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5.전환과 관련된 절차의 진행 등 모든 사항은 피투자기업이 담당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결과를 투자자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한다.

③(전환 비율 및 전환가액의 조정)

1.본 제6차우선주발행시 전환비율은 1:1(우선주1주당 보통주1주)로 한다.

④본 제6차우선주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피투자기업이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 제6차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우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2019 년 11 월 08 일 변경 2019 년 12 월 16 일 등기 2021 년 05 월 29 일 말소 2021 년 06 월 07 일 등기

1. 명의개서대리인

303895

한국예탁결제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국제금융센터)

2021 년 04 월 22 일 설치 2021 년 04 월 27 일 등기

1. 전환주식의 전환

2021년 5월 29일 우선주식(상환전환우선주식) 416,666주를 보통주식 416,666주로 전환 2021 년 05 월 29 일 변경 2021 년 06 월 07 일 등기

- 1. 주식의 양도
 - ① 주식의 양도 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021 년 12 월 01 일 신설 2021 년 12 월 14 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1회 전환사채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4 월 03 일 기간만료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사채의 총액

급50,000,000원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4 월 03 일 기간만료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5천만원권 1매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4 월 03 일 기간만료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급50,000,000원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4 월 03 일 기간만료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의 조건

만기일에 전환사채발행금액을 7,200원(칠천이백원)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되는 사채발행자의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채인수자의 의사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수령 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보통주 전환시 단주는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4 월 03 일 기간만료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보통주식 6.944주(액면금액 급500위)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4 월 03 일 기간만료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청구기간

전환사채발행익일(2012년 12월 25일)부터 만기일(2014년 04월02일)까지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2014 년 04 월 03 일 기간만료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2회 전환사채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4 월 27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사채의 총액

급100,000,000원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4 월 27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1억원권 1매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4 월 27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급100.000.000위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4 월 27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의 조건

만기일에 전환사채발행금액을 7,200원(칠천이백원)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되는 사채발행자의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채인수자의 의사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수령 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보통주 전환시 단주는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4 월 27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보통주식 13,888주(액면금액 금500원)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4 월 27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청구기간

전환사채발행익일(2012년 12월 25일)부터 만기일(2014년 04월27일)까지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4 월 27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3회 전환사채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5 월 23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사채의 총액

급20,000,000원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5 월 23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303895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 2천만원권 1매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5 월 23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급20,000,000원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5 월 23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의 조건

만기일에 전환사채발행금액을 7,200원(칠천이백원)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되는 사채발행자의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채인수자의 의사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수령 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보통주 전환시 단주는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5 월 23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보통주식 2,777주(액면금액 금500원)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5 월 23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청구기간
 - 전환사채발행익일(2012년 12월 25일)부터 만기일(2014년 05월23일)까지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5 월 23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4회 전환사채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5 월 25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사채의 총액
 - 급20,000,000원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5 월 25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 2천만원권 1매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5 월 25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각 전화사채의 납입금액

급20,000,000원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5 월 25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의 조건

303895

만기일에 전환사채발행금액을 7,200원(칠천이백원)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되는 사채발행자의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채인수자의 의사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수령 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보통주 전환시 단주는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5 월 25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보통주식 2,777주(액면금액 금500원)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5 월 25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청구기간
 - 전환사채발행익일(2012년 12월 25일)부터 만기일(2014년 05월25일)까지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5 월 25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5회 전환사채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7 월 27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사채의 총액

급130,000,000원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7 월 27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1억3천만원권 1매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7 월 27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급130,000,000원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7 월 27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의 조건

만기일에 전환사채발행금액을 7,200원(칠천이백원)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되는 사채발행자의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채인수자의 의사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수령 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보통주 전환시 단주는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7 월 27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보통주식 18,055주(액면금액 금500원)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7 월 27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청구기간

303895

전환사채발행익일(2012년 12월 25일)부터 만기일(2014년 07월27일)까지 < 2012 년 12월 24일 발행 2012년 12월 28일 등기 > < 2014년 07월 27일 전부전환 2014년 12월 31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6회 전환사채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7 월 29 일 기간만료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사채의 총액

급20.000.000위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7 월 29 일 기간만료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2천만원권 1매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7 월 29 일 기간만료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급20,000,000원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7 월 29 일 기간만료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의 조건

만기일에 전환사채발행금액을 7,200원(칠천이백원)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되는 사채발행자의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채인수자의 의사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수령 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보통주 전환시 단주는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7 월 29 일 기간만료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보통주식 2,777주(액면금액 금500원)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7 월 29 일 기간만료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청구기간

전환사채발행익일(2012년 12월 25일)부터 만기일(2 014년 07월27일)까지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07 월 29 일 기간만료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7회 전환사채

-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 2014 년 11 월 15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 1. 전환사채의 총액

급150,000,000원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등기번호 303895 < 2014 년 11 월 15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1억5천만원권 1매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2014 년 11 월 15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급150.000.000원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2014 년 11 월 15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만기일에 전환사채발행금액을 7,200원(칠천이백원)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되는 사채발행자의 보 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채인수자의 의사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수령 받고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단 보통주 전환시 단주는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2014 년 11 월 15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보통주식 20,833주(액면금액 금500원)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2014 년 11 월 15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2012 년 12 월 28 일 등기 >

< 2014 년 11 월 15 일 전부전환 2014 년 12 월 31 일 등기 > 저 화 사 채

< 2012 년 12 월 24 일 발행

제 8회 전환사채

1. 전환청구기간

< 2015 년 12 월 03 일 발행 2015 년 12 월 14 일 등기 >

전환사채발행익일(2012년 12월 25일)부터 만기일(2014년 11월15일)까지

- < 2020 년 08 월 29 일 전부전환 2020 년 09 월 14 일 등기 >
- 1. 전환사채의 총액

급3,000,000,000원

< 2015 년 12 월 03 일 발행 2015 년 12 월 14 일 등기 >

급2,000,000,000원

- < 2015 년 12 월 14 일 경정 2016 년 01 월 07 일 등기 >
- < 2020 년 08 월 29 일 전부전환 2020 년 09 월 14 일 등기 >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급일십억원권 3매

< 2015 년 12 월 03 일 발행 2015 년 12 월 14 일 등기 >

금일십억원권 2매

- < 2015 년 12 월 14 일 경정 2016 년 01 월 07 일 등기 >
- < 2020 년 08 월 29 일 전부전환 2020 년 09 월 14 일 등기 >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303895

전액

< 2015 년 12 월 03 일 발행 2015 년 12 월 14 일 등기 > < 2020 년 08 월 29 일 전부전환 2020 년 09 월 14 일 등기 >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의 조건
 - 1.전환비율과 전환가격: 전환사채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하고, 전환가격은 회사 보통주식 1주 (액면금액 500원) 당 사채금액 7.200원으로 한다.
 - 1주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자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 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이나한다. 단, 전환시체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없다. 2.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하고 ,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 3. 전환사체의 전환전에 그 당시의 전환사체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 사체 (전환사체,신주인수인수권부사체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 될 수있는 종류의 사체)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 4.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이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환가격x(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시가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2호,3호,5호,6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사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권리락주가 (유상증자시)또는 조정 사유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 5.합병,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6.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 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 2015 년 12 월 03 일 발행 2015 년 12 월 14 일 등기 >
 - 1.전환비율과 전환가격: 전환사채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하고, 전환가격은 회사 보통주식 1주 (액면금액 500원) 당 사채금액 7,200원으로 한다.
 - 1주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 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없다.
 - 2.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하고 ,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 3.전화사채의 전환전에 그 당시의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
등기번호
```

303895

주식관련 사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 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이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환가격x(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시가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2호,3호,5호,6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사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권리락주가 (유상증자시)또는 조정 사유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5.합병,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체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체권자가 가질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6.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 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2015 년 12 월 14 일 경정 2016 년 01 월 07 일 등기 >

< 2020 년 08 월 29 일 전부전환 2020 년 09 월 14 일 등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 2015 년 12 월 03 일 발행 2015 년 12 월 14 일 등기 >

< 2020 년 08 월 29 일 전부전환 2020 년 09 월 14 일 등기 >

1. 전환청구기간

발행일(2015.12.3) 이후부터 만기(2018.12.2)일 전일까지로 한다.

< 2015 년 12 월 03 일 발행 2015 년 12 월 14 일 등기 >

발행일(2015.12.3) 이후부터 만기(2019.6.2)일 전일까지로 한다.

< 2018 년 11 월 30 일 변경 2018 년 12 월 13 일 등기 > 발행일(2015.12.3) 이후부터 만기(2020.8.31)일 전일까지로 한다.

< 2019 년 05 월 31 일 변경 2019 년 07 월 16 일 등기 >

< 2020 년 08 월 29 일 전부전환 2020 년 09 월 14 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 9회 전환사체

< 2015 년 12 월 14 일 경정 2016 년 01 월 07 일 등기 >

< 2020 년 08 월 29 일 전부전환 2020 년 09 월 14 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급1,000,000,000원

< 2015 년 12 월 14 일 경정 2016 년 01 월 07 일 등기 >

< 2020 년 08 월 29 일 전부전환 2020 년 09 월 14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일십억워권 1매

- < 2015 년 12 월 14 일 경정 2016 년 01 월 07 일 등기 >
- < 2020 년 08 월 29 일 전부전환 2020 년 09 월 14 일 등기 >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전액

- < 2015 년 12 월 14 일 경정 2016 년 01 월 07 일 등기 >
- < 2020 년 08 월 29 일 전부전환 2020 년 09 월 14 일 등기 >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의 조건
 - 1.전환비율과 전환가격: 전환사채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하고 , 전환가격은 회사 보통주식 1주 (액면금액500원) 당 사채금액7,200원으로 한다.
 -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단수주 대금의 해당 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사체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없다. 2.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하고 ,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 3.전환사채의 전환전에 그 당시의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 사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 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 4.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x(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 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시가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2호,3호,5호,6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사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중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시)또는 조정 사유발생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 5.합병,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6.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액은 액면 가격으로 한다.
 -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 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 2015 년 12 월 14 일 경정 2016 년 01 월 07 일 등기 >
 - < 2020 년 08 월 29 일 전부전환 2020 년 09 월 14 일 등기 >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 < 2015 년 12 월 14 일 경정 2016 년 01 월 07 일 등기 >
- < 2020 년 08 월 29 일 전부전환 2020 년 09 월 14 일 등기 >
- 1.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2015.12.3)이후부터 만기(2018.12.2)일 전일까지로 한다.
 - 2016 년 01 월 07 일 등기 > < 2015 년 12 월 14 일 경정
 - <u> 발행일(2015, 12, 3)이후부터 만기(2019, 6, 2)일 전일까지로 한다.</u>
 - < 2018 년 11 월 30 일 변경 2018 년 12 월 13 일 등기 >
 - <u> 발행일(2015.12.3)이후부터 만기(2020.8.31)일 전일까지로 한다.</u>
 - < 2019 년 05 월 31 일 변경 2019 년 07 월 16 일 등기 >
 - < 2020 년 08 월 29 일 전부전환 2020 년 09 월 14 일 등기 >

환 사 채 전

제 10회 전환사채

- < 2020 년 07 월 31 일 발행 2020 년 08 월 14 일 등기 >
- 2021 년 02 월 05 일 등기 > < 2020 년 12 월 31 일 전부전환
- 1. 전환사채의 총액

급 2,000,000,000원

- < 2020 년 07 월 31 일 발행 2020 년 08 월 14 일 등기 >
- < 2020 년 12 월 31 일 전부전환 2021 년 02 월 05 일 등기 >
- 1. 각 전화사채의 금액

금 이십억원권 1매

- < 2020 년 07 월 31 일 발행 2020 년 08 월 14 일 등기 >
- 전부전환 2021 년 02 월 05 일 등기 > < 2020 년 12 월 31 일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전액

- < 2020 년 07 월 31 일 발행
- 2020 년 08 월 14 일 등기 >
- < 2020 년 12 월 31 일 전부전환
- 2021 년 02 월 05 일 등기 >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의 조건
 - 1. 전환비율과 전환가격 : 전환사채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하고 · 전환가격은 회사 보통주식 1주(액면금액 500원)당 사채금액 980원으로 한다.
 - 각 사채의 권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주는 그 단 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시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의 대금 에 대한 해당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유상증자 등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가. 사체권자가 전화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 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조정한 다.
 - 나.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

303895

으로써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A+(B×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조정전 전환가격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분할 또는 합병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라. 회사가 분할,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할,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마. 본 호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에, 각 사유별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된 전환가격은,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 회할 수 없으며,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액을 하회할 수 없다.

< 2020 년 07 월 31 일 발행 2020 년 08 월 14 일 등기 >

< 2020 년 12 월 31 일 전부전환 2021 년 02 월 05 일 등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 2020 년 07 월 31 일 발행 2020 년 08 월 14 일 등기 >

< 2020 년 12 월 31 일 전부전환 2021 년 02 월 05 일 등기 >

1. 전환청구기간

2020년 8월 2일부터 2021년 8월 1일까지로 한다.

< 2020 년 07 월 31 일 발행 2020 년 08 월 14 일 등기 >

< 2020 년 12 월 31 일 전부전환 2021 년 02 월 05 일 등기 >

주 식 매 수 선 택 권

-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을 초래하게 한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5.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시에 정한 기간동안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303895

-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7.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상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 2004 년 11 월 29 일 설정 2004 년 12 월 10 일 등기 >
 - < 2008 년 09 월 25 일 삭제 2008 년 10 월 09 일 등기 >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회사는 임직원에게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 2008 년 09 월 25 일 변경 2008 년 10 월 09 일 등기 >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임원 또는 직원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을 초과할 수 없다.

- < 2008 년 09 월 25 일 변경 2008 년 10 월 09 일 등기 >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한다.

- < 2008 년 09 월 25 일 변경 2008 년 10 월 09 일 등기 >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날로부터 5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2008 년 09 월 25 일 변경 2008 년 10 월 09 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2008 년 09 월 25 일 변경 2008 년 10 월 09 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2004 년 06 월 28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04 년 06 월 28 일 등기

303895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

열 람 용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일시 : 2024년05월29일 14시53분57초

43/43